

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(제3조 관련)

1.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

체육관, 수영장, 볼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에어로빅장, 탁구장, 골프연습장, 게이트볼장, 파크골프장, 풋살장 등의 실내·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

2. 읍·면·동

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운동장, 골프연습장, 게이트볼장, 롤러스케이트장, 체력단련장, 파크골프장, 풋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